

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|
| 의안 번호 | 52 |
|----------|----|

제출년월일 : 1997. 12. 2.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(법률제5301호, '97.3.7)과 부산광역시 조례 개정안 준칙을 근거로 현행 규정의 용어 및 근거조항의 불일치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법 제2조제5호에 의거 오수의 침전, 분해시설을 “오수정화시설” 로 하되 일정규모 이하의 정화조 시설을 단독정화, 합병정화조로 세분함에 따라 정화조에 대한 용어 개정 (안 제3조)
- 나. 법 제2조제8호의 용어가 “축산폐수정화시설” 에서 “축산폐수처리시설” 로 개정됨에 따른 용어 개정 (안 제3조, 제4조, 제16조)
- 다. 법 제18조의 전문개정으로 종전 “분뇨관련영업” 의 용어를 “분뇨등관련영업” 으로 용어 개정 (안 제3조, 제5조)
- 라.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근거와 분뇨수집·운반처리 규정의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개정 (안 제5조, 제15조)
- 마. 법 제35조제5항의 삭제로 분뇨관련영업허가의 영업자 정수를 정하는 규정과 정수조정 규정을 삭제함. (안 제15조제1항, 제2항)
- 바. 기타 별표3의 과태료 부과기준표의 용어를 개정함.

3. 관계법령

-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, 제12조, 제18조, 제35조
-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0조제1항, 제59조제1항
- 부산광역시조례개정준칙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중 “관할구역내의” 를 “구역별 일정을 정하여 관할구역내의” 로 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정화조” 를 “정화조(단독 및 합병정화조)” 로 “축산폐수 정화시설” 을 “축산폐수처리시설” 로 하고 “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” 을 “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” 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중 “축산폐수정화시설” 을 “축산폐수처리시설” 로 한다.

같은조제3항중 “축산폐수정화시설” 을 “축산폐수처리시설” 로 하고 “정화시설” 을 “정화 및 처리시설” 로 한다.

같은조제4항중 “축산폐수정화시설” 을 “축산폐수처리시설” 로 한다.

제5조제1항중 “법 제19조제1항” 을 “법 제18조제1항” 으로 하고 “분뇨 관련 영업자” 를 “분뇨등 관련영업자” 로 한다.

같은조제3항제1호중 “분뇨관련 영업허가” 를 “분뇨등 관련영업허가” 로 한다.

제6조제2항중 “법 제9조” 다음에 “법 제9조의2” 를 “법 제14조” 다음에 “법 제14조의2” 를 삽입한다.

제15조제명중 “(분뇨관련 영업허가)” 를 “(분뇨등 관련영업허가)” 로 하고 같은조제1항중 “구청장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자의 정수를 정할 수 있으며” 를 “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” 로 한다.

같은조제2항중 “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를 조정코자” 를 “분뇨등 관련영업허가를 하고자” 로 한다.

같은조제3항중 “분뇨관련 영업허가” 를 “분뇨등 관련영업허가” 로 한다.

같은조제4항중 “분뇨관련 영업자” 를 “분뇨등 관련영업자” 로 한다.

제16조제3항중 “축산폐수정화시설” 을 “축산폐수처리시설” 로 한다.

제17조제1항관련 “별표3” 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1조(생략) | 제1조(현행과 같음) |
| 제2조(분뇨의 수집·운반) ①부산광역시하 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은 관할 구역내의 분뇨를 수집, 운반하여야 한다. ②(생략) | 제2조(분뇨의 수집·운반) ① <u>구역별일정</u> <u>을 정하여 관할구역내의</u> ②(현행과 같음) |
| 제3조(정화조 등의 청소통지) ①구청장은 관 할구역내에 설치된 정화조·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(이하 “정화조 등” 이 라 한다)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. ②~④(생략) | 제3조(정화조 등의 청소통지) ① <u>정화조(단독 및 합병정화조)</u> <u>축산폐수처리시설</u> <u>시행규칙 제30조제1항</u> <u>및 제59조제1항</u> ②~④(현행과 같음) |
| 제4조(정화조 등의 내부청소) ①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. 1.~2.(생략) ②(생략) ③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소 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화시설이 정상가동 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통지한 청소이 행 기한 10일이전에 채취한 방류수를 국· 공립연구기관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가 측정한 수질 시험성적서 및 오니저류조 등의 오니를 제 거한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 다. | 제4조(정화조 등의 내부청소) ① <u>축산폐수처리시설</u> 1.~2.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③ <u>축산폐수처리시설</u> <u>정화 및 처리시설</u> .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>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또는 <u>축산폐수정화시설</u>의 방류수 수질 시험 성적서 및 오니저류조 등의 오니를 제거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청소이행의무 여부를 판단하여 내부청소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류할 수 있다.</p> <p>제5조(분뇨수집, 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) ①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, 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법 제35조에 의한 <u>분뇨관련 영업자</u>로 하여금 이행(이하“대행업자”라 한다)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행업자는 별표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②(생략)</p> <p>③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</p> <p>1.법 제55조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<u>분뇨관련 영업허가</u>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</p> <p>2.~4.(생략)</p> <p>④~⑤(생략)</p> | <p>④ <u>축산폐수처리시설</u></p> <p>제5항(분뇨수집, 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) ① 법 제18조제1항 <u>분뇨등 관련영업자</u>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</p> <p>1. <u>분뇨등 관련영업허가</u></p> <p>2.~4.(현행과 같음)</p> <p>④~⑤(현행과 같음)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|
| <p>제6조(비정상가동 정확조 등에 대한 신고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<u>법 제9조, 제10조, 제14조</u>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의 설치신고, 내부청소, 시설의 개선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6조(비정상가동 정확조 등에 대한 신고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법 제9조, 제9조의2, 제10조, 제14조, 제14조의2</u></p> |
| <p>제7조~제14조(생략)</p> | <p>제7조~제14조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15조(분뇨관련 영업허가) ①구청장은 <u>법 제35조</u>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자의 정수를 정할 수 있으며, 분뇨수집·운반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내에, 정확조 청소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 구역내에 두어야 한다.</p> <p>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<u>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를 조정코자</u> 할 때에는 신문광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영업자의 선정은 공개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</p> <p>③구청장이 <u>분뇨관련 영업허가</u>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구역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또는 정확조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분포, 수집·운반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,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| <p>제15조(분뇨등 관련영업허가) ①<u>법 제35조의</u> 규정에 의하여</p> <p>② <u>분뇨등 관련영업허가를 하고자</u></p> <p>③ <u>분뇨등 관련영업허가</u>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>④구청장은 분뇨수집·운반 또는 정화조등 청소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인력·장비·설비 등을 추가 확보토록 명할 수 있다.</p> <p>제16조(가축사육 제한)</p> <p>①~②(생략)</p> <p>③구청장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시설규모 등을 판단 <u>축산폐수정화시설</u>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.</p> | <p>④</p> <p>.</p> <p>. <u>분뇨등 관련영업자</u></p> <p>.</p> <p>.</p> <p>제16조(가축사육 제한)</p> <p>①~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</p> <p>. <u>축산폐수처리시설</u></p> <p>.</p> |

[별표 3]

과태료 부과기준(제17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‘마’ 항중 “축산폐수정화시설” 을 “축산폐수처리시설” 로 한다

2. 개별기준

- 1의 “축산폐수정화시설” 을 “축산폐수처리시설” 로 하고,
1의다항 “축산폐수정화시설” 을 “축산폐수처리시설” 로 한다
- 2의 “(법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)” 을 “(법 제9조제2항,
법 제9조의2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)” 으로 한다
- 3의 “축산폐수정화시설” 을 “축산폐수정화시설” 로 하고,
“(법 제11조)” 를 “(법 제12조)” 로 하고 3의가항(1),(3) 및 나항
(1),(3)의 “축산폐수정화시설” 을 “축산폐수처리시설” 로 한다
- 4의 “축산폐수정화시설” 을 “축산폐수처리시설” 로 하고 “(법
제13조제1항 및 제3항, 제22조 또는 제27조)” 를 “(법 제13조제1
항, 제13조의2제1항, 제22조 또는 제27조)” 로 하고, 가항 및 다항
의 “축산폐수정화시설” 을 “축산폐수처리시설” 로 한다
- 5및가항(2),(3), 나항(1),(3), 라항의 “축산폐수정화시설” 을 “축산폐수
처리시설” 로 한다
- 8의 “분뇨관련영업자(법 제35조제4항)” 을 “분뇨등 관련영업자
(법 제35조제3항)” 으로 한다
- 9의 “분뇨관련영업자(법 제35조6항)” 을 “분뇨등 관련영업자
(법 제35조의3제1항)” 으로 한다
- 14의 “분뇨관련영업자(법 제46조1항)” 를 “분뇨등 관련영업자
(법 제45조)” 로 한다

[별지]

과태료 부과기준(제17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-|
| <p>가~라(생략)</p> <p>마. <u>축산폐수정화시설</u>(허가대상)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<u>축산폐수정화시설</u>을 말하며 <u>축산폐수정화시설</u>(신고대상)은 법 제24조제4항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<u>축산폐수정화시설</u>을 말한다.</p> <p>바.(생략)</p> | <p>가~라(현행과 같음)</p> <p>마. <u>축산폐수처리시설</u></p> <p>.</p> <p>. <u>축산폐수처리시설</u></p> <p><u>축산폐수처리시설</u></p> <p>.</p> <p>. <u>축산폐수처리시설</u></p> <p>바.(현행과 같음)</p> |

2. 개별기준

| 현행 | | | | 개정안 | | | |
|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부과대상 | 부과금액(만원) | | | 부과대상 | 부과금액(만원) | | |
|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|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|
| <p>1.오수정화시설·정화조 또는 <u>축산폐수정화시설(신고대상)</u>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위반한 자(법 제5조)</p> <p>가,나(생략)</p> <p>다.<u>축산폐수정화시설(신고대상)</u></p> <p>(1)~(4)(생략)</p> | | | | <p>1.</p> <p>. . . <u>축산폐수처리시설</u> .</p> <p>.</p> <p>.</p> <p>가,나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<u>축산폐수처리시설(신고대상)</u></p> <p>(1)~(4)(현행과 같음)</p> | | | |
| <p>2.오수정화시설이나 정화조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(법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)</p> <p>가,나(생략)</p> | | | | <p>2.</p> <p>.</p> <p>.</p> <p>(<u>법 제9조제2항, 제9조의2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</u>)</p> <p>가,나(현행과 같음)</p> | | | |
| <p>3.오수정화시설,정화조 또는 <u>축산폐수정화시설</u>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시설을 사용한자 (법 제11조, 제26조 또는 제33조제2항)</p> | | | | <p>3.</p> <p>. . . <u>축산폐수처리시설</u>의</p> <p>.</p> <p>.</p> <p>(<u>법 제12조,</u>)</p> <p>.</p> | | | |

| 현행 | | | | 개정안 | | | |
|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부과대상 | 부과금액(만원) | | | 부과대상 | 부과금액(만원) | | |
|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|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|
| 가.준공검사를 받기전에 사용한자 | | | | 가. | | | |
| (1)정화조·축산폐수정화 시설(신고대상)의 경우 | 20 | 40 | 50 | (1) . . . 축산폐수처리 시설 | .. | .. | .. |
| (2)오수정화시설의 경우 | 50 | 50 | 50 | (2) | .. | .. | .. |
| (3)축산폐수정화시설 (허가대상)의 경우 | 50 | 50 | 50 | (3)축산폐수처리시설 | .. | .. | .. |
| (4)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경우 | 20 | 30 | 50 | (4) | .. | .. | .. |
| 나.준공검사에 불합격 판정 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 | | | | 나. | | | |
| (1)정화조·축산폐수정화 시설(신고대상)의 경우 | 50 | 50 | 50 | (1) . . . 축산폐수처리 시설 | .. | .. | .. |
| (2)(생략) | | | | (2)(현행과 같음) | | | |
| (3)축산폐수정화시설 (허가대상)의 경우 | 100 | 100 | 100 | (3)축산폐수처리시설 | .. | .. | .. |
| (4)(생략) | | | | (4)(현행과 같음) | | | |
| 4.오수정화시설·정화조 또 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나 변경을 당해시설 의 설계·시공업등록을 하지 아니한자 또는 수질 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 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 특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| | | | 4. · 축산폐수처리시설 · . | | | |

| 현행 | | | | 개정안 | | | |
|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부과대상 | 부과금액(만원) | | | 부과대상 | 부과금액(만원) | | |
|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|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|
| 말긴자(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, 제22조 또는 제27조) | | | | (법 제13조제1항, 법 제13조의2제1항, 제22조 또는 제27조) | | | |
| 가.정화조·축산폐수정화 시설(신고대상)의 경우 | 50 | 50 | 50 | 가. 축산폐수처리 시설 | .. | .. | .. |
| 나.오수정화시설의 경우 | 80 | 80 | 80 | 나. | .. | .. | .. |
| 다.분뇨처리시설, 축산폐수정화시설(허가대상)의 경우 | 100 | 100 | 100 | 다. 축산폐수처리시설 | .. | .. | .. |
| 5.오수정화시설·정화조, 축산폐수정화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 (법 제14조제2항, 제28조 제3항 또는 제33조의2제1항) | | | | 5. 축산폐수처리시설 | | | |
| 가.방류수 수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| | | | 가. | | | |
| (1)(생략) | 10 | 20 | 50 | (1)(현행과 같음) | .. | .. | .. |
| (2)신고대상 축산폐수정화 시설의 경우에는 6월 마다 1회이상 | | | | (2) 축산폐수처리 시설 | | | |
| (3)허가대상 축산폐수정화 시설인 경우에는 분기 1회 이상 | 30 | 50 | 100 | (3) 축산폐수처리 시설 | .. | .. | .. |

| 현행 | | | | 개정안 | | | |
|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부과대상 | 부과금액(만원) | | | 부과대상 | 부과금액(만원) | | |
|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|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|
| 나.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| | | | 나. | | | |
| (1)처리용량이 10㎡미만인 정화조, 오수정화시설, <u>축산폐수정화시설</u> (신고대상) 및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경우 | 10 | 30 | 50 | (1) · <u>축산폐수처리시설</u> | · | · | · |
| (2)(생략) | | | | (2)(현행과 같음) | | | |
| (3) <u>축산폐수정화시설</u> (허가대상)의 경우 | 50 | 70 | 100 | (3) <u>축산폐수처리시설</u> | · | · | · |
| 다.(생략) | | | | 다.(현행과 같음) | | | |
| 라.축산폐수배출시설 및 <u>축산폐수정화시설</u> 관리 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(허가대상) | 50 | 100 | 100 | 라. <u>축산폐수처리시설</u> | · | · | · |
| 마.(생략) | | | | 마.(현행과 같음) | | | |
| 6.~7.(생략) | | | | 6.~7.(현행과 같음) | | | |
| 8.영업구역,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분뇨관련 <u>영업자(법 제35조제4항)</u> | | | | 8. · · · · <u>분뇨등 관련</u> <u>영업자(법 제35조제3항)</u> | | | |
| 가,나(생략) | | | | 가,나(현행과 같음) | | | |
| 9.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분뇨관련 <u>영업자(법 제35조제6항)</u> | 30 | 50 | 100 | 9. · <u>분뇨등 관련영업자(법 제35조의3제1항)</u> | · | · | · |
| 10~13(생략) | | | | 10~13(현행과 같음) | | | |

| 현행 | | | | 개정안 | | | |
|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부과대상 | 부과금액(만원) | | | 부과대상 | 부과금액(만원) | | |
|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|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|
| 말긴자(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, 제22조 또는 제27조) | | | | (법 제13조제1항, 법 제13조의2제1항, 제22조 또는 제27조) | | | |
| 가.정화조·축산폐수정화 시설(신고대상)의 경우 | 50 | 50 | 50 | 가. 축산폐수처리 시설 | .. | .. | .. |
| 나.오수정화시설의 경우 | 80 | 80 | 80 | 나. | .. | .. | .. |
| 다.분뇨처리시설, 축산폐수정화시설(허가대상)의 경우 | 100 | 100 | 100 | 다. 축산폐수처리시설 | .. | .. | .. |
| 5.오수정화시설·정화조, 축산폐수정화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 (법 제14조제2항, 제28조 제3항 또는 제33조의2제1항) | | | | 5. 축산폐수처리시설 | | | |
| 가.방류수 수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| | | | 가. | | | |
| (1)(생략) | 10 | 20 | 50 | (1)(현행과 같음) | .. | .. | .. |
| (2)신고대상 축산폐수정화 시설의 경우에는 6월 마다 1회이상 | | | | (2) 축산폐수처리 시설 | | | |
| (3)허가대상 축산폐수정화 시설인 경우에는 분기 1회 이상 | 30 | 50 | 100 | (3) 축산폐수처리 시설 | .. | .. | .. |

2. 개별기준

| 현행 | | | | 개정안 | | | |
|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부과대상 | 부과금액(만원) | | | 부과대상 | 부과금액(만원) | | |
|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|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|
| <p>1.오수정화시설·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(신고대상)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위반한 자(법 제5조)</p> <p>가,나(생략)</p> <p>다.축산폐수정화시설(신고대상)</p> <p>(1)~(4)(생략)</p> | | | | <p>1.</p> <p>. 축산폐수처리시설</p> <p>.</p> <p>.</p> <p>.</p> <p>가,나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축산폐수처리시설(신고대상)</p> <p>(1)~(4)(현행과 같음)</p> | | | |
| <p>2.오수정화시설이나 정화조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(법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)</p> <p>가,나(생략)</p> | | | | <p>2.</p> <p>.</p> <p>.</p> <p>(법 제9조제2항, 제9조의2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)</p> <p>가,나(현행과 같음)</p> | | | |
| <p>3.오수정화시설,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시설을 사용한자(법 제11조, 제26조 또는 제33조제2항)</p> | | | | <p>3.</p> <p>. 축산폐수처리시설의</p> <p>.</p> <p>.</p> <p>(법 제12조,)</p> <p>.</p> | | | |

[별표 3]

과태료 부과기준(제17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‘마’ 항중 “축산폐수정화시설” 을 “축산폐수처리시설” 로 한다

2. 개별기준

- 1의 “축산폐수정화시설” 을 “축산폐수처리시설” 로 하고,
1의다항 “축산폐수정화시설” 을 “축산폐수처리시설” 로 한다
- 2의 “(법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)” 을 “(법 제9조제2항,
법 제9조의2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)” 으로 한다
- 3의 “축산폐수정화시설” 을 “축산폐수정화시설” 로 하고,
“(법 제11조)” 를 “(법 제12조)” 로 하고 3의가항(1),(3) 및 나항
(1),(3)의 “축산폐수정화시설” 을 “축산폐수처리시설” 로 한다
- 4의 “축산폐수정화시설” 을 “축산폐수처리시설” 로 하고 “(법
제13조제1항 및 제3항, 제22조 또는 제27조)” 를 “(법 제13조제1
항, 제13조의2제1항, 제22조 또는 제27조)” 로 하고, 가항 및 다항
의 “축산폐수정화시설” 을 “축산폐수처리시설” 로 한다
- 5및가항(2),(3), 나항(1),(3), 라항의 “축산폐수정화시설” 을 “축산폐수
처리시설” 로 한다
- 8의 “분뇨관련영업자(법 제35조제4항)” 을 “분뇨등 관련영업자
(법 제35조제3항)” 으로 한다
- 9의 “분뇨관련영업자(법 제35조6항)” 을 “분뇨등 관련영업자
(법 제35조의3제1항)” 으로 한다
- 14의 “분뇨관련영업자(법 제46조1항)” 를 “분뇨등 관련영업자
(법 제45조)” 로 한다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|
| <p>④구청장은 분뇨수집·운반 또는 정화조등 청소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인력·장비·설비 등을 추가 확보토록 명할 수 있다.</p> <p>제16조(가축사육 제한)</p> <p>①~②(생략)</p> <p>③구청장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시설규모 등을 판단 축산폐수정화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.</p> | <p>④</p> <p>.</p> <p>. . . . 분뇨등 관련영업자</p> <p>.</p> <p>.</p> <p>제16조(가축사육 제한)</p> <p>①~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</p> <p>. 축산폐수처리시설</p> <p>.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|
| <p>제6조(비정상가동 정화조 등에 대한 신고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<u>법 제9조, 제10조, 제14조</u>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의 설치신고, 내부청소, 시설의 개선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6조(비정상가동 정화조 등에 대한 신고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법 제9조, 제9조의2, 제10조, 제14조, 제14조의2</u></p> |
| <p>제7조~제14조(생략)</p> | <p>제7조~제14조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15조(분뇨관련 영업허가) ①구청장은 <u>법 제35조</u>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자의 정수를 정할 수 있으며, 분뇨수집·운반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내에,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 구역내에 두어야 한다.</p> <p>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<u>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를 조정코자</u> 할 때에는 신문광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영업자의 선정은 공개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</p> <p>③구청장이 <u>분뇨관련 영업허가</u>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구역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또는 정화조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분포, 수집·운반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,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| <p>제15조(분뇨등 관련영업허가) ①<u>법 제35조의</u> 규정에 의하여</p> <p>② <u>분뇨등 관련영업허가를 하고자</u></p> <p>③ <u>분뇨등 관련영업허가</u>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-|
| <p>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또는 <u>축산폐수정화시설</u>의 방류수 수질 시험 성적서 및 오니저류조 등의 오니를 제거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청소이행의무 여부를 판단하여 내부청소를 1년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류할 수 있다.</p> | <p>④ <u>축산폐수처리시설</u></p> |
| <p>제5조(분뇨수집,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) ①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,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법 제35조에 의한 <u>분뇨관련 영업자</u>로 하여금 이행(이하“대행업자”라 한다)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행업자는 별표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②(생략)</p> <p>③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</p> <p>1.법 제55조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<u>분뇨관련 영업허가</u>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</p> <p>2.~4.(생략)</p> <p>④~⑤(생략)</p> | <p>제5항(분뇨수집,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) ① 법 제18조제1항 <u>분뇨등 관련영업자</u>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</p> <p>1. <u>분뇨등 관련영업허가</u></p> <p>2.~4.(현행과 같음)</p> <p>④~⑤(현행과 같음)</p> |

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중 “관할구역내의” 를 “구역별 일정을 정하여 관할구역내의” 로 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정화조” 를 “정화조(단독 및 합병정화조)” 로 “축산폐수 정화시설” 을 “축산폐수처리시설” 로 하고 “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” 을 “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” 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중 “축산폐수정화시설” 을 “축산폐수처리시설” 로 한다.

같은조제3항중 “축산폐수정화시설” 을 “축산폐수처리시설” 로 하고 “정화시설” 을 “정화 및 처리시설” 로 한다.

같은조제4항중 “축산폐수정화시설” 을 “축산폐수처리시설” 로 한다.

제5조제1항중 “법 제19조제1항” 을 “법 제18조제1항” 으로 하고 “분뇨 관련 영업자” 를 “분뇨등 관련영업자” 로 한다.

같은조제3항제1호중 “분뇨관련 영업허가” 를 “분뇨등 관련영업허가” 로 한다.

제6조제2항중 “법 제9조” 다음에 “법 제9조의2” 를 “법 제14조” 다음에 “법 제14조의2” 를 삽입한다.

제15조제명중 “(분뇨관련 영업허가)” 를 “(분뇨등 관련영업허가)” 로 하고 같은조제1항중 “구청장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자의 정수를 정할 수 있으며” 를 “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” 로 한다.

같은조제2항중 “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를 조정코자” 를 “분뇨등 관련영업허가를 하고자” 로 한다.

같은조제3항중 “분뇨관련 영업허가” 를 “분뇨등 관련영업허가” 로 한다.

같은조제4항중 “분뇨관련 영업자” 를 “분뇨등 관련영업자” 로 한다.

제16조제3항중 “축산폐수정화시설” 을 “축산폐수처리시설” 로 한다.

제17조제1항관련 “별표3” 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.